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4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미애의원안)	3
--	---

I.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4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5. 2.

(3) 회 부 일 : 2025. 5.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육농정책의 하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 면적의 43.8%를 차지하고,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에 달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혜택이 실제 경작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새로운 육농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분산농지로 농기계 이용 비효율성 등 농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농지집적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농지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농지 양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임미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66조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의 100% 감면 ☐ <u>감면대상 농지 또는 초지</u> -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등, 자경산지, 농지대토 <u><신 설></u> <u><신 설></u>	☐ <u>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범위 확대</u> ☐ (현행과 같음) ☐ <u>농지 또는 초지 범위 확대</u> -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등, 자경산지, 농지대토, <u>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u> ☐ <u>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5)</u>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 양도소득세 감면액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u>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6)</u> ☐ 농지집적화 농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이하 이 조에서 “농지집적화”라 한다)하려는 농지 ☐ 양도소득세 감면액 - 농지집적화 농지의 연접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현 행	개정안
<신 설>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33조제1항) ○ 제33조, 제43조, 제66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액 2억원	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7) ○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 ○ 양도소득세 감면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범위 확대 ○ 제33조, 제43조, 제66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7,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 (현행과 동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미애의원안 2025. 5. 2. 발의(의안번호 10342)

□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 제1항제10호¹⁾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제2207739호)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9.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제34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농지집적화 농지(「농지법」 제15조2)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려는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안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66조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또는 초지의 대상과 현행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제69조), 축사용지(제69조의2), 어업용 토지등(제69조의3), 자경산지(제69조의4)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³⁾

2) 「농지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 예컨대,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등에 2026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자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 개정안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등, 자경산지 외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

-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의미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함.⁴⁾

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면적은 6만 8,165ha로 전체 농지의 4.5% 수준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농가수, 인증면적, 출하량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모든 통계지표가 202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물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물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산물 연도별 인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3년 대비)
건수(건)	28,435	27,787	26,995	26,500	26,337	△0.6%
농가수(호)	59,249	55,354	50,722	49,520	48,668	△1.7%
인증면적(ha)	81,827	75,435	70,127	69,412	68,165	△1.8%
출하량(톤)	495,794	517,383	446,781	473,531	472,852	△0.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 농지이용증진사업⁵⁾은 농지집적화를 목적으로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경지면적과 농가수는 10% 이상 감소한데 반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농지의 집적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4년과 2024년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비교]

(단위: ha, 호, %)

구 분	2014	2024	증감률 (14년 대비)
경지면적	1,691,113	1,504,615	△11.0
농가수	1,120,776	973,707	△13.1
농가당 경지면적	1.51	1.55	2.6

자료: 통계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5) 「농지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자경산지는 10년)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채지주 중 일부는 자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농지 소유자가 친환경 농업인에게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인 임대차계약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은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한데 모아 규모화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넷째, 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은 임차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어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가 촉진될 수 있고, 농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첫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영방식⁶⁾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농지법」⁷⁾에서 정

6)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고 있지 않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등 임대농지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한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⁸⁾되었는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지매각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면 농지가 생산수단이 아닌 단순 자산으로 인식되어 투기적 소유가 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자경농지’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7)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8)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해 엄격한 요건⁹⁾을 두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비자경 농지소유에 대한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은 투기 수요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8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결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